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-45호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1월 16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 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)에 의거,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운영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함(제16조의2)
- 나. 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과 내실을 기함(제20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-60 (종암동), 우편번호: 02805, 전화: 2241-5876, FAX: 2241-6626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붙임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